

제400회 국회
(정기회)**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11월8일(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6)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2)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370)
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6)
5.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7)
6.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3)
7.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9)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22)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9)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0)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8)
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19)
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5)
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3)
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2)
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8)
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9)
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00)
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8)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1)

상정된 안건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6) 3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2) 3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370) 3
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6) 3
5.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7) 3
6.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3) 3
7.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9) 3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22)	3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9)	3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0)	3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8)	3
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19)	3
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5)	3
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3)	3
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2)	3
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8)	3
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9)	3
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00)	3
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8)	3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1)	3

(10시05분 개의)

○소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김형동 위원님이 사임하고 이주환 위원님이 새로 보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회의록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하게 언론이 안 계셔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말씀해 주시지요,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비) 위원 오늘 법안소위 준비하시느라고 행정실에서 고생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검토보고서를 너무 늦게 주세요.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늦게 의원실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물리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후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때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고려해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실에서는 관련한 법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충분히 숙의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은주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

○소위원장 김영진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저희도 어제 좀 늦게 소위 공청회 개최를 확인하는 바람에…… 그래도 오늘 여야 양당 간사님께서 합의해 주셔서 22일 날 10시에 전환법 관련해서 소위에서 약식 공청회를 진행하게 된 것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좀 미리미리 원활한 소통과 통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논의할 법안인 5번, 6번, 7번 의안 산업구조 전환, 정의로운 전환 기본법안,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 의원, 강은미 의원,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3개 법안에 관해 법안소위 관련해서 참고인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다.

그런데 오늘 급하게 된 관계로 22일 날 오전 10시에 3명의 진술인 의견을 듣고 법안소위 위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는 걸로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결정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련한 의사일정을 충분히 준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논의해서 결정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간사님.

○임이자 위원 지난번 우리 전체회의 때 이은주 위원님 말씀을 여당 간사로서 수용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오늘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한 번 더 말씀하셔서 세 분이 총 7분으로 하는 걸로 정했으니까 그걸 엄수해 주시고요.

그날 오전에 모든 토론회가 끝나야 오후에 법안심사가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예, 예정된 날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6)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2)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370)
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36)
5.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7)
6.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3)
7.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9)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113122)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9)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10)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8)

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19)

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5)

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3)

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2)

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8)

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9)

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00)

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8)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1) (10시09분)

○소위원장 김영진 먼저 안건 상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축조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모 법안소위 심사자료 두 번째 쪽을 보시면 개정안 주요 내용이 있는데 정부안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법 제명이 바뀌고 나서 시행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 법이 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입니다.

목차에 보시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5개 항목이 있는데 1·2번이 김정재 의원안이고 3·4·5번이 정부안인데 내용이 아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2개, 정부안 3개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점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자, 고등학교 제적·퇴학자, 고등학교 미진학자 등이 해당됩니다.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특화된 직업훈련사업의 규모가 작아서 활성화가 필요하여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두 번째 항목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생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서 이로부터 훈련생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부터 10조, 15조만 인용하고 있는데 그 외 결격사유로 형법상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카메라 촬영 등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특례법 제2조(정의)로 규정하면 다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개정안의 형벌, 결격기간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직종인 대학 교원과 달리 피해자의 연령 등과 관계없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으므로 이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고등교육법 대학 교원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와 성인을 구분해서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 성인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 결격기간을 영구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견은 이렇게 구분 없이 두면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결격기간 2년으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해서 정부는 정기적으로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6쪽, 마지막으로 신설되는 결격사유가 법 시행 이전의 사항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여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2항까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 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학교 밖 청소년 추가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고요.

두 번째, 결격사유로서 성폭력범죄에 관한 처벌 이력 추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의 범위, 그러니까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결격사유에 대한 제한 원칙에 대해서는 현재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저희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는 2년간 자격정지를 하는 규정 등을 고려해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제한에 대한 것을 낮추되 전체적인 자격에 대한 제한기간은 2년으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걸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이나 범죄경력조회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될 필요가 있고 관련한 적용례도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이수진(비) 위원 차관님, 앞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여성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더 많이 하겠다 이런 근거 조항인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이수진(비) 위원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법이 따로 있잖아요. 대안학교 교육법도 있고 사실 관련된 법안들이 교육 쪽에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공교육 외에 다른 어떤 대안학교라든지 또 대안학교도 사실 인가와 미인가로 구분이 되고 다양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또는 학교 외에서 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의 선택이라든지 스스로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공감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존재해야 되고 그런 의미로 바라봐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좋은 법일 수 있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직업훈련을 받아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직업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지원하는 거야 이렇게 인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놀고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고 그걸 지원해야 돼 이런 의미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어야 된다,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말씀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이 조항을 넣는 것에 동의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고 저희가 좀 더 관심을 쏟아야 되는 대상에 넣겠다는 뜻이지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무조건 직업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보다는 우리가 정책대상에서 소외시키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저는 우리나라의 대안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국민들이,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또 바라고 있는, 특히나 정부가 공교육 밖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근거 법령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업능력개발을 심어 주는 게 실제로는 전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중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은 특별하게 너네는 직업훈련을 꼭 받아야 돼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는 다양한 지원 속에 개별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런 것들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존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이후에 이걸 근거로 해서 다른 지원책들이 만들어질 때도 저는 노동부에서, 교육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념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알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어요. 실제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1조에서 14조의3까지 범죄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수정의견 내 주신 것 맞지요?

○**전문위원 김원모**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그 수정의견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이수진(비) 위원** 그렇다면 본 법안은 좀 부족함이 있지만 이 부분들이 들어간다면, 수정안

이 같이 합쳐진다면 저는 일정 부분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은주 위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또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았던 범죄자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신당역, 이번에 스토킹범죄자에 의한 살인사건에서 발생했던 사각지대였거든요.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음란물 관련해서는……

○**이은주 위원** 일단 스토킹범죄로 처벌된 것.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스토킹범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은주 위원** 전문위원님……

○**임이자 위원**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내려가시지요.

우선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점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개씩 정리하고 가시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1항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이견이 없고.

○**임이자 위원** 아닙니다. 지금 이수진 위원님 반대의견 내신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영진** 아닙니다. 동의의견을 낸 겁니다.

○**임이자 위원** 동의의견을 낸 거예요?

○**소위원장 김영진**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견을 낸 거지요.

○**이수진(비) 위원** 반대는 아니고 이게 차별적인 것처럼 비쳐지지 않는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쭙볼게요.

차관님, 이게 지금 선언적 규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잠시만,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임이자 위원** 얘기하세요.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소위원장 김영진 차관님 답변해 주세요.

○이은주 위원 답변해 주세요, 들어가는지.

두 가지를 확인한 겁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그리고 형이 확정된 이 부분이 포함되는 건지.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것도 사각지대거든요. 이 두 가지에 의한 것이 포함이 되는 건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확인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그러니까 스토킹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게 형법상의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들어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특례법 13조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2조(정의) 규정에서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어서 아마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포함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얘기한 것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 개정안 취지의 어떤 내용이라서 그 범위를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달리해야 되면 찾아보거나 아니면 다른 입법례를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고민이 필요한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의견 주세요.

○전문위원 김원모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토킹은 여기 포함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고요. 최종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음란물은 11쪽의 성폭력범죄 특례법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2개를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토킹은 형법과 성폭력 특례법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11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약간 시간이 필요하니까 확인해 주시고.

임이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우리가 지금 직업능력 개발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임이자 위원 바뀌었는데 그 법 3조 제4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이 당연히 들어가는 게 좋고, 더 범위를 넓혀 놓는 거니까 지원해주는 부분이 저는 맞다라고 봐서…… 나는 아까 이수진 위원이 반대하는 줄 알고, 그런데 찬성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아까 성폭력 특례법 제2조(정의)를 갖다가 한번 읽어 주 보세요.

○전문위원 김원모 정의가 12쪽에 있는데 한 페이지 다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2조(정의)인데 1호부터 5호까지……

○임이자 위원 그러면 결국은 스토킹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해당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원모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현재 11쪽 보면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조항에 스토킹 관련한 조항이 지금 없잖아요?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없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추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은주 위원님이 만약에 스토킹 관련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해서 개정안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우선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일반 규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원래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폭력에 관해서는, 성범죄에 관해서는 100만 원으로 벌금형으로 낮춰서 적용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스토킹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걱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일반 규정으로 저희가 금고 이상의 형은 다 2년간 자격정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돼서 일단은 배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금고 이상이 아닌 100만 원 밑의 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처벌해야 되는, 여러 가지 비례의

원칙이든 유사 법률에서의 규정 등을 다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업훈련교사하고 다른 교원에 관한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은주 위원님 의견 주시고 이주환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은주 위원 이번에 신당역 스토킹범죄자가 실제로 살해를 한 거고요. 그 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방공무원으로 임명이 됐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국가공무원법 같은 경우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작년에 제정이 돼서 사각지대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낸 상태거든요.

이게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면 개정 이후에 개정안을 내야 되는, 아니면 이게 오늘 논의가 안 되면 이후에 제가 발의해서 병합 심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영진 이주환 위원님 다음에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주환 위원 저는 간단한 내용인데요.

지금 성폭력범죄 관련해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결격사유가 되는 것인데 이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낮추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간이 2년이라고 정해진 근거가 뭐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지금 다른 범죄,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의 경우에서 2년으로 자격정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환 위원 다른 법률에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법률에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2년으로 한 것입니다.

○이주환 위원 그러면 타 법과의 비례원칙을 따지자면 다른 법에서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런 성범죄 관련해서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가지고 1년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결격사유 100만 원 이상 벌금형, 3년 여기에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수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비) 위원 차관님, 학교 밖 청소년을 기본원칙에 넣는 것은 저는 동의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거고, 제대로 된 집행을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성폭력범죄 관련 결격사유 이걸 보니까 우리 정부안은 미성년자랑 성인에 대한 구분이 따로 없어요. 고등교육법은 미성년자·성인 구분을 해 놔지 않습니까? 결격사유 요건을 고등교육법이랑 같이 맞추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우선 직업훈련의 특성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이나, 특히 초·중·고교육을 하거나 미성년자를 전담으로 하는 교육을 하는 경우하고 저희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95% 이상이 다 성인들을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는 교원과 100% 같이, 똑같이 일치시켜서 적용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3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2년으로 자격정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성범죄가 되게 중대범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또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인데도 3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한 것을 3년으로 고치든지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부적인 정합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일단 2년으로 한 것입니다.

○이주환 위원 정합성도 중요하지만 이 개정의 취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꼭 3년이라고 다 막아지고 2년이라고 안 막아지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금고 이상 형도 같이 3년으로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같이 3년으로 고치면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은 변동이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현재는 2년으로 여러 가지 비례원칙,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주환 위원님이 3년 제안,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임이자 위원 정부 측 의견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이걸 이주환 위원님이…… 현재 2년으로, 전체적인 이 상황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이 있었고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하시는 걸로 할까요?

○전문위원 김원모 전문위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원모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비례원칙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 100만 원, 2년은 정부 의견입니다. 위의 표에 정부 의견으로 돼 있는데 이주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고등교육법 대학교 교원과 다르냐인데 미성년자와 성인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달라지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성인을 구분해서 성범죄를 나눠서 구분을 하면, 고등교육법과 맞추면 형평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그러냐고. 정부안하고 다른데……

○전문위원 김원모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에서의 직업훈련은 학생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성인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걸로 판단을 했는데 이주환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타당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성인을 구분해서 고등교육법과 똑같이 일치시키면 법 전체적으로 타 법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업훈련교사 중에서는 미성년자를 전담하는 훈련교사는 없고요. 교원의 경우는 미성년자를 전담하는 교원이 당연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수진(비) 위원 학교 밖 청소년도 미성년자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학교 밖 청소년은 물론……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거나……

○이수진(비) 위원 앞으로 받을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소수라서, 직업훈련교사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직업훈련은 미성년자와 성인이 같이 혼합해서 훈련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따로따로 훈련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2년으로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예를 들어서 어쨌든 형량상으로는 중대범죄에 관해서는 2년으로 자격정지를, 자격제한을 저희가 두고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사실은 바꿔야 되는 상황이 조금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고등교육법의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는 집행 후에 5년을 두고 있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성폭력에 관해서 형 확정 후 3년으로 이렇게 약간 차별을 두고, 거기도 똑같이 맞추지는 않고. 그러니까 더 낮춰서 자격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저희는 내부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3년으로 올리게 되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 직업훈련교사에 대해서 5년이든 4년이든 이렇게 더 올려야 되는데 그게 꼭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성범죄에 관해서는 어쨌든 형량을 낮춰서 자격정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이자 위원 좀 더 고민해 보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또 고민을 합니까, 이것을? 오늘 의결해서 마무리해 주셔야지요.

○이주환 위원 마무리하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저는 현재 정부 측 의견이 있고 또 임이자 간사님 동의하셨고, 성인과 미성년자가 같이 교육을 받는 그런 형태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이라서 정부 측 의견 수용하고 이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추가 개정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제가 볼 때 또 이거를 길게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스토킨 처벌법 관련한 법률이 현재 어느 상황이고 어떻게 규정이 돼 있고 개정안이 어떻게 되는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개정안을 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오늘 병합해서

여기에서 같이 논의하기에는 범위를 좀 뛰어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스토킹 처벌법 관련한 사안들이 현재 어디까지 규정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개정안을 내서 이 부분을 또 개정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은주 위원 오늘 이것이 결정이 안 되고 다음번 법안소위 때 한 번 더 다뤄질 때 병합 심사하기에는 조금 무리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 법안이 지금 제출되지 않았고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속 기다리기에는 좀 타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개정안을 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은주 위원 국가공무원법은 개정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와 유사한 형태가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렇지요. 지금 여기는 보니까 성폭력 관련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두 가지를 했는데 그건 별도 법안이기 때문에 별도 법안을 추가하려면 개정안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전문위원 의견은 어떠세요?

○이은주 위원 개정안을 제가 빨리 내면 다음번 법안소위 때 병합 심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전문위원 김원모 지금 위원장님 의견은 이 법은 통과를 시키고……

○소위원장 김영진 통과시키고 나중에 개정안을 내시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은주 위원 개정안을 내고?

전문위원님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원모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실 때 그런 부분들 좀 다 반영해서 하셔야지.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제1항……

○임이자 위원 잠깐만요, 저번에 스토킹법이 언제 통과됐지요?

○이은주 위원 작년에 통과됐지요.

○임이자 위원 작년에 통과됐잖아, 그러면 그 정도는 검토의견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았나요?

○이은주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신당역 살해사건이 바로 스토킹범죄자가 저지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많이 걸리네요.

○임이자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이은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이은주 위원님 그렇지요?

○이은주 위원 그러면 개정안을 내는 걸로?

○소위원장 김영진 예.

왜냐하면 이 법안은 직업능력 개발훈련 중점대상으로 하는 사안이고 그거는 직장 내 스토킹범죄에 관한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조금 내용을 풍부하게 검토하셔서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채용에 관한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직장 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리 얘기되지 않았던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도 없었고 이 부분은 좀 있어서……

이걸 오늘 여기서 논의를 종결짓는 건 아니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마무리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

○이은주 위원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사실은 스토킹이 더 무서워.

○이수진(비) 위원 이 법은 즉시 시행인가요?

○이은주 위원 6개월이 경과한 날이네요.

○이수진(비) 위원 6개월이요?

○이은주 위원 예.

○이수진(비) 위원 즉시 시행하시지요.

○이은주 위원 그러면 좀 미비한 것 같으니 스토킹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발의를 해서 병합 심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아, 아직 법안을 발의 안 한 거지……

○이은주 위원 국가공무원법은 발의돼 있습니다. 똑같이 자격에 관한 것, 결격사유로 처벌 이력을 추가하는 것.

○소위원장 김영진 이은주 위원님 생각은 발의를 하고 다시 검토해서 같이 일괄 처리하자는 의견이지요?

○이은주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의견 주세요.

○전문위원 김원모 발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정확히 조문에 추가하면 되고, 만약에 그걸 반영을 하시려면 개정안을 내실 필요는 없고 다음 회의 때 준비를 해서 그때 의결을 하면 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새로 개정안을 내시고

오늘 확인된 것은 처리하자 이런 의견이십니다.

○이은주 위원 저도 알아들었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 그러니까 수정의견을 낸 거지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 현재 성폭력 특별법, 형법에 들어가 있는데 스토킹 관련한 처벌법 관련해서 확인하고 다음 논의까지 추가해서 가능할지를 판단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원모 15쪽의 정부안 배경은 직무 능력은행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16쪽에 보시면 3번 항목 직무능력정보 수집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인 직무능력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이 정보를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다 명확하게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21쪽의 4번 항목 직무능력 인정·취소 관련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의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때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능력 중심 채용 및 인사관리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22쪽 일반인이 파악하기에는 법률에 예시를 하는 것이 나으므로 직무능력정보 유형, 신뢰도 등 대표적인 인정 기준을 법률에 예시하면서 부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6쪽입니다.

기타 조문 정비인데요,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

에 부합할 수 있도록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에 월차유급휴가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법에서도 ‘월차’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교사의 결격사유 중 실행과 집행유예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되므로 형을 실행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밑에 유사 입법례, 직업안정법에도 같은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개인별 직무능력정보 수집·관리·제공 근거 마련 관련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두 번째도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취소 근거 마련 관련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이것도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기타 조문 정리는 저희가 조문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비) 위원 차관님, 직무능력은행제 시행에 따라서 NCS 기반으로 국민 직무능력정보 시스템 구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이수진(비) 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개인별로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제25조 6항이지요—그리고 직무능력 인정 기준, 절차, 방법 및 인정취소의 세부 기준 26조……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걸 다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하신 바가 없어요, 국회에. 이거를 법안으로 담겠다고 하셨으면 미리 보고를 하셔서 설명을 하시고 논의를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논의 선행도 없이 이거를 바로 이 자리에서 하시겠다라는 게 너무 무리 아닙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왜 사

전 절차를 하나도 진행을 안 하십니까?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이걸 다 처리하고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NCS가 시행된 지가 벌써 한 7, 8년이 됐고 현재 이미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해서 한 1000여 개 이상이 개발이 돼서 각 훈련기관과 실제로 교육기관에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도 짜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국가직무능력, 그러니까 NCS를 기반으로 해서 자격이나 훈련이나 교육이나 경력 등이 서로 호환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학력이 필요 없는 경력 위주 또는 기술과 자격 기반의 사회로 가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어떤 그거라서,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시급성을 이해를 해주시면……

○**이수진(비) 위원** 그러니까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필요성 인정한다고요. 그렇게 시급한데, 그러면 야당 위원이라 설명 안 해주신 거예요? 왜 설명 안 해주셨어요? 이것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시행령에 광범위하게 위임돼 있는 거니까.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또 추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설명해 주셔요, 지금.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설명은 저희가 따로 드리는데요. 다만 여기 조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핵심적인, 저희가 정보수집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18쪽에 보시면 국가기술자격법이나 법령의 자격취득정보하고 그다음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정보하고, 그 밖에 정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주가 1, 2호, 25조 3항의 1· 2호가 제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정보시스템을 만든다는 취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저는 이게 논의가 안 돼서 이렇게 법에서 다루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충분히 논의하고 이후에 설명을 좀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임이자 위원** 차관님, 이게 지금 정부입법이잖

아요. 그렇지요? 이게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발의해서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게 아니고 정부입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야당 위원님들한테 가서는 사전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면서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무능력정보의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해서 수정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일단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동의해 주시고 나중에 좀 설명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 법안을 지금 또 보류한다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진(비) 위원** 임이자 위원님께서 본인 생각을 얘기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필요한 일이지만 제 생각을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이 법안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인지 못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동의가 되지만 그렇지만 시행령에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안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노동부가 분명하게 미리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듣지 않고 오늘 법안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박대수 위원님.

○**박대수 위원**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 여기서 오늘 법안소위 열면서 지금 뭐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게 시간만 낭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회의를 종료하시고요 전문위원이든 고용부든 위원들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이상 회의가 가 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수진(비) 위원** 위원장님, 법안이 오늘 이것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법안이 20개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충분히 논의가 안 된 것들은 저희가 보통 관례상 그동안 회의할 때도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돌리고 다음 법안을 논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례대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1항과 3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 수집·관리·제공과 직무능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다 설명해 나가는 것도 좀 무리는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이 안 됐다라고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긴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이수진 위원님께서 알고 싶으신 게 대통령령으로 어디까지 정한다는 것을 알고 싶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수진(비) 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지금 이게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는 거고 그 대통령령 위임돼 있는 것들을 법률로 끌어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행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해 놔지 않습니까.

○임이자 위원 지금 얘기가 어떻게 돼 가는 건지…… 제가 잘못 이해했나?

○소위원장 김영진 자, 상호 토론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박대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수진 위원님의 의견도 있으시고 또 이 논의가 2항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NCS 관련한 시행령을 법률로 올리는 것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위임범위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우리 법안소위 전체 위원님께 꼭 사전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걸 다음번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행령을 법률로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NCS를 기반으로 해서 훈련이나 과정관리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현재 현장에서는 다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개인별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인별로 훈련이나 자격 취득이나 하는 이력을 NCS 기반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서 개인들이 본인이 했던 이력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인정서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정부가 공인된 인정서를 교부하겠다는 것까지가 지금 현재 내용이라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 광범위하게 담는다고보다는 지금 현재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냥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것을 공인된 정부 인증으로 제공할겠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게 결국은 나중에 국가의 어떤 역량체계라

고 하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훈련이나 자격이나 경력이나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차관님, 저희 내용은 다 아니까요. 현재 시행령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 NCS에 관련한 근거를 주고자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사전에 이 정책이나 내용에 대해서 전혀 고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설명을 하고 다음번 논의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항, 4항은 관련한 내용들을 보고하고 논의한 이후 추가적인 법률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대수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박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대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이 20개 법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위원들한테 공지가 안 됐잖아요. 다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 안건 가지고, 2개 안건 가지고 1시간 잡아 먹었어요. 그러면 이 20개 안건 가지고 밤샘 겁니까? 사전에 미리 좀 알려줘 가지고 그다음에 회의하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박대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소위원장 김영진 그렇게 하시지요.

5항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고, 그래서 나머지 이것은 내용 보고한 이후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항 논의 들어가겠습니다.

4항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의원님의 대표발의에 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3번, 4번 다 넘겼다는 얘기에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 다음 추가 논의로……

○임이자 위원 언제?

○소위원장 김영진 사후 보고, 다음 논의에……

○이주환 위원 오늘 보고 뒤로 돌려서 다시 한번 보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 4항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모 두 번째 소위 자료입니다.

3쪽에 보시면 법무부 외국인등록정보 관련입니다.

왼쪽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를 추가하고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외국인등록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출입국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출입국정보는 아래 표 왼쪽에 있는 외국인등록번호, 출입국 일자는 포함되어 있는데 우측에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외국인 구직자가 거짓정보를 제출하거나 구직 신청 이후에 체류자격이 변경되면 확인이 곤란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외국인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취업알선정보망에 연계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라는 법령상 개선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에 법무부 의견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에 고용부와 정보제공 방식 등 협의를 거쳐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이 관련해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다만 여기 개정안 자체에는 외국인등록자료 전체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고 저희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 외국인등록자료 중에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만 받으면 지금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소될 것 같고 또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까지의 제공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서로 간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자료 중에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으로 한정하면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환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 수정하는 내용에 저도 크게 반대

는 아닙니다마는 관련 입법례를 보면, 다른 입법 사례에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외국인등록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제한된 사항들만 등록하게 돼 있나요? 그것 검토 안 해 보셨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물론 다른 입법례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고용정책 기본법이, 현재 저희 입법례가 되게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거라서 어제 법무부랑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사실은 또 8호에 출입국에 관한 규정, 내용이 하나 들어 있어서 8호·9호가 합쳐지면 저희가 정보를 제공받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고 또 법무부 쪽 의견도 있어서 그렇게 수정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환 위원 정부 수정안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저도 같은 취지입니다.

법안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 과도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공 정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체류기간 이것 얘기하신 거지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이은주 위원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수진(비) 위원 저도 감사원 감사결과도 있고 개선 권고에 따라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고용정책 기본법의 고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한 안 추가 관련해서 자격과 기간으로 한정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분명히 좁혀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서 이 안은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인데요 5항, 6항, 7항 관련해서는 다음 주 22일 날 참고인 3명에 관한 진술을 듣고, 소규모 토론회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받고 할까요, 아니면……

의견 한번 주시지요.

○이수진(비) 위원 아니, 이게 제정법인데……

○이은주 위원 토론회 끝나고……

○이수진(비)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제정법이고 제가 작년에 낸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오늘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왔는데…… 그리고 제정법 관련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렇지요. 그러면요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22일 날 진술인들 의견 듣고 다시 논의하고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정법이라서 공청회도 한번 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들이 있어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5항, 6항, 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개요가 있고 조문별 검토에 17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별 검토에서 목적, 정의, 기본원칙, 사회적 대화, 책무까지는 각 제정안별로 쪽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한꺼번에 보고드리면 좋은데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개요, 목적, 정의를 보고드리고 기본원칙, 사회적 대화, 책무는 두 번째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는 탄소중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발의 배경이 있고요. 2쪽은 논의 경과와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3쪽은 제정안 비교로 조문 순서별로 전체 비교표가 만들어져 있고요. 4쪽은 비교가 내용별로 되어 있는데 4쪽 가운데 보시면 심의·의결기구, 전문위원회, 지원기관, 근로자대표 공동결정 이런 부분이 제정안별로 차이가 큰 부분입니다.

5쪽에 9월 15일 실시한 공청회 논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제정안들에 대해서는 입법을 반대하는 의견은 없고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은 저탄소·디지털 부문 일자리 전망 참고 표입니다.

7쪽 조문별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목적인데 목적과 다음 정의까지 보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표 좌측에는 제정안별 주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가운데 패러그래프 보시면,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전환 등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목적의 차별성 및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관련법인 탄소중립 기본법은 금년도 3월에 시행되었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금년도 7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목적과 관련해서는 선제적 지원을 명시하느냐 또 사회경제적 주체들 참여를 명시하느냐 등의 차이가 있고, 공청회에서는 한국노총이 목적 조항에 고용안정, 좋은 일자리, 정의로운 전환 등의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의 정의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이자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은 탄소중립, 산업 디지털 전환, 산업전환, 노동전환, 근로자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강은미 의원안은 정의 대상 범위가 더 넓습니다.

이는 기존 산업·업종이 감소·소멸하고 다른 산업·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인데 산업전환, 노동전환은 가치중립적인 용어이고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은 가치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아래 쪽에 학계 등에서는 정의로운 전환과 공정한 전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치중립적인 산업·일자리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제정안 용어 비교가 있습니다. 산업전환, 노동전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표로 비교하고 있고요.

강은미 의원안에는 추가적인 정의 규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쪽에 있는 기후위기, 일하는 사람, 양질의 일자리, 사업주, 사용자,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과 정의 부분을 먼저 논의하고 그다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우선 의원님 세 분 안이 있는데 저희가 목적 조항에서는 이 법 자체가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제적 지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전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이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전환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을 부여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목적 조항은 말씀드린 대로 임이자 의원님이나 이수진 의원님 안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노동전환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노동전환에 대한 목적 조항에서 저희가 노사 모두 이게 구조조정이나 업무의, 직무의 어떤 전환 등을 사전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런 표현보다는 그냥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목적이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강은미 의원님 안에 들어 있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나 여러 가지 사회 주체에 대한 참여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환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의 규정들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그리고 이은주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선제적인 지원은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제적인 지원이란 전환이란 많이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관님께서도 굉장히 다르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노동자들이 원해서 일 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서 바뀌거나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 법안을 마련해야겠다고 한 거고.

제가 이 법안을 성안하는 데 8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의견을 청취 안 한 것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의 노동자들, 노조들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라든지, 그리고 또 사업주들 중에서도 사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는 준비를 잘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업체라든지 그리고 정비업체들 이런 데 사장님들이 다 하소연하고 있고 지금 지역사회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마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도 이 법이 만들어져서 지역에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져서 이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전환을 정의롭게 잘 만들어 낼 것이냐, 공정하게 노동부가 역할을 해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초유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목적 부분에서 차관께서 약간 이렇게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목적이라든지 정의가 사실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지요. 노동자들이 그 산업을 없애라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고 또 세금 내고 그랬으면 이렇게 전환에 따른 대책을 정부가 세워 줘야 되고, 정부는 법안이 없으면 사실 예산 반영도 어렵고 움직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그렇게 철학적인 의미도 담아서 선제적이기도 하지만 사전적·사후적인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걸 법안에 담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가 되어서 만들어진 건데 오늘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사업주들, 지역사회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이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거의 1년 2개월 동안,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저는 계속 만나서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 그리고 실제로 작년하고 올해 초 호남화력이랑 화력발전소 몇 군데 문 닫지 않았습니까? 문 닫았을 때 그때 실제로는 1차 하청까지는 어느 정도 고용안정을 위한 역할들을 했었지만 2차 하청 같은 경우는 노동부도 그렇고 산자부도 그렇고 직장을 잃었는데 전혀 파악도 못 하고 있었고 제가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깐, 노동부에서는 산자부에서 자료 안 준다고 저희한테 바로바로 자료 못 주셨어요. 그러다가 몇 달에 걸쳐서 그 자료도 받게 되어 갖고 11명, 12명 일자리 잃게 된 것 알았지 않습니까, 노동부도.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애를 쓴 것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한 20~30년 안에 대대적으로 다들 이 전환에 따라서 문제가 될 텐데 실제로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철학을 가지고 법을 만든다면 사후적으로 그냥 생긴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지하고 있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도 보일 수가 있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그러니까 지금 이수진 의원님 안도 나와 있고 임이자 의원님 안도 나와 있고 강은미 의원님도 나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목적에서 내용을 저희 정부가 어떻게 정리를 하면 가장 좋을까 하는 의견을 물으셔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사실은 목적의 어떤 취지나 이런 내용들이 다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어쨌든 의견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린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일단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게 더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환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전환이 일어나고 난 뒤에가, 물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다 지원하는 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법안에서 강조가 되어야 될 부분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게 강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노동전환이라는 표현을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도 여러 의견을 들었지만 저희도 의견을 들어 보니 노동전환이 꼭 구조조정처럼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중립적으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또 이동을 지원하는 정도로 표기를 하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수진(비) 위원** 잠깐만요.

오히려 고용불안이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현장에서요. 노동전환이라는 것은 뭔가 기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 그런 중립적인 단어로 보이고 고용불안 이것은 이미 해고를 하거나 그 일자리를 없애거나 이게 다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그 정리된 것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마치 다 그냥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현장에서는 우리를 다 내보내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구나, 오히려 노동자들은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여요. 되게 다르네요, 받아들이는 게.

○**소위원장 김영진**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은주 위원** 저는 좀 전에 차관계서 설명할 때 고용노동부가 이 전환법과 관련해서 인식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걸 느꼈습니다. 이분들은 말하자면 산업전환 과정에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분들이에요. 고용노동부는 누구보다 그분들 입장에서 이 법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전체가 아니었다는 것에 저도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사회 이행 과정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것은 이 주체들이, 내 문제거든요. 이 주체들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노동자 당사자만의 문제를 떠나서 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 또 취약계층들, 피해를 실제로 입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많아요. 그걸 국가가 최소화해야 된다, 그것이 정의로운 전환정책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주체들의 참여가 목적에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주환 위원님.

○**이주환 위원** 원래 법이라는 게 제일 첫 조항이,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의견이나……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 제정법 발의하신다고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법안을, 임이자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을 볼 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임이자 의원의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지원한다’를 이수진 의원님께서 한마디로 ‘노동전환’이라는 한 단어로 축약을 하신 것 같고 그 축약의 의미의 차이를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국어사전에 이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따지기는 힘듭니다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게 어떻게 전환되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약방문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전환 과정에서 아니면 이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를 좀 원활하게, 그 불안을 최소화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 두 목적 조항을 잘 선택을 해서 지금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논의 진행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22일 날 다시 한번 논의하니까 오늘은 개략적으로 논의를 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숙지하고 22일 날 또 심도 있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깊은 것보다는 개략적인 의견을 좀 주시고 그때 진술인 의견 듣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1번 목적·정의 관련한 것은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요. 다음에 3항부터 다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목적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차관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이걸 나중에 결론을 내리시겠지만 결국 고용불안이나 이수진 의원님의 노동전환이라는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두 목적 조항을 합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일단 드립니다.

○이은주 위원 주체에 대한 참여도 꼭 고민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얘기를 했고 사실 여기서 저희가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안정에 관한 조치를 우리가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목적이 되게 국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환에 따라 근로자,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하는 쪽의 목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쪽에 목표를 삼는 법이 되어야 탄소중립 기본법이나 이런 법들과 중복도 피할 수 있고 저희도 정책적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드러나고 저희도,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그것도 훨씬 더 정책을 수행하거나 자원을 동원하는 데 편하고 좀 쉽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특별히 그분들에 대한 그걸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은주 위원 선제적으로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고 주체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전환의 목적과 정의, 세부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더 논의를 진행하고요.

○이수진(비)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적 대화, 사회적 참여 이 부분이 제가 법안 발의한 3조 기본원칙에 담겨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기본원칙, 지금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면서 논의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원모 16쪽입니다.

16쪽 3조(기본원칙)는 법 제정의 가치와 의미를 기본원칙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이를 통해 전환에 있어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으로 천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정안들은 규정 형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임이자 의원안은 6조에 사회적 대화로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수진 의원안은 3조(기본원칙)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안은 제3장(작업장 내 민주주의)에서 19조부터 23조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회에서는 기본원칙에 규정하고 있는 보호 대상에 산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22쪽의 사회적 대화입니다.

이수진 의원안에서 기본원칙에 포함된 사회적 대화가 임이자 의원안에서는 6조의 별도 조문으로, 내용이 고용안정 지원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실체적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 강은미 의원안 제3장(작업장 내 민주주의) 관련 규정으로 아래 표에서 보시는 민주적 의사결정, 정보제공, 민주적 의사결정 협약의 체결, 초기업별 민주적 의사결정 협약 체결 사업주에 대한 지원, 분쟁의 해결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9쪽의 책무입니다.

임이자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사업주,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근로자의 책무가 미규정되어 있습니다.

책무를 통하여 국가의 시책 강구, 지자체의 지

원정책과의 연계의무 등을 부과하여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책무를 빼느냐를 판단해 주셔야 하고, 지원계획 수립의무 부과 여부와 관련해서는 책무 규정은 일반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책무 규정에 무난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사회적 대화를 규정하고 중요원칙으로 채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것을 기본원칙에 둘 것인지 별도의 조항으로 빼서 둘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면 조금 더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별도의 조항으로 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강은미 의원님 안에서 여러 가지 직장 내 민주주의에 관한 조항들을 기본원칙에 넣었는데 사실 이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다 현행 노동관계법하고 상치가 되거나 충돌하는 규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다가 산업전환에 대해서만 노동관계법의 예외조항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책무 관련해서는 당연히 근로자의 책무가, 선언적 조항이기도 하고 사실 노동전환에 있어서는 기업이나 사업주나 정부나 모두가 일정 정도의 양보와 희생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의 책무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전문위원님 의견 얘기하신 것대로 지원계획 수립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도로 수정의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전환과 관련해서 사회적 대화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노동부는 경사노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또 위원장 논란이 있는 경사노위로 한정하는 것, 이건 사회적 대화 구조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물론 저희가 경사노위를 상정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하게 사회적 대화의 논의의 주체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은주 위원 저는 그래서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예.

○소위원장 김영진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비) 위원 여러 의원님들의 법안도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것을 거의 1년 가까이 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법안의 어디쯤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런 고민들을 다 함께 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의견도 담고, 노동자들은 대화의 주체가 돼서, 노동자들이 객체라든지 결정된 이후에 따라야 되는 그런 존재 정도로 이 법안에 담긴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참 컸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만들 때도 실제로 처음에는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같이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랬지요. 고용에 대해서 사업체 접근, 사업을 접는데 이걸 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노동자들이 그것에 동의해야 되느냐. 굉장히 불신과 그리고 그 이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것 다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원칙 즈음에 사회적 대화라는 것들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그러면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노동부에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루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정책심의회가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충분히 노동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위원 구성으로 개정이 되어야지요. 개선이 되고 개선된 그런 협의체, 회의체에서의 논의에 대한 신뢰가 노동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좀 유감입니다.

노사가 실질적으로 심의 주체가 되도록 그렇게 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정책 기본법의 고용정책심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제대로 된 고용정책심의회가 가

동이 되고 사회적 대화의 주체들이 참여해서 논의를 한다면 그렇다면 전문가를 포함한 노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탄소중립 기본법이 발의가 되고 그리고 대기업들은 대부분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이라든지 거기는 또 산자부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다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법안에 담았는데 사실은 조금 긴가민가하고 걱정도 됩니다. 제대로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 지금 이 고용정책심의회 기능 가지고. 그러나 제대로 역할을 하게끔 고용노동부가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권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벌써 심의·의결기구까지 나가신 건가요?

○이수진(비) 위원 아니요, 그냥 중간에 얘기를 드린 거예요.

○소위원장 김영진 뒤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따 있을 때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책무 얘기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한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전문위원, 다음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항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김원모 33쪽입니다.

2개씩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6항의 기본계획인데 다음 항목의 위원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 여부를 판단해 주셔야 되고, 표에 기본계획 포함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이 계획의 명칭이 제정안이 좀 다릅니다.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 정의로운일자리전환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장관이 노동전환 기본계획 수립과 작성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자고 한국노총에서 주장했습니다.

다음 산업·업종 등 지정 관련입니다.

기본계획에 지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법률에 지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특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을 ‘우선 지원’ 정도로 약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8쪽입니다.

위원회 관련입니다.

강은미 의원안은 기본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를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상호 대립되는 의견 조정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의·의결기구가 임이자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고용정책심의회를 활용하고 있고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위원 24인으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부에 전문위원회로 산업·업종·지역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9쪽의 별도 위원회 설치 필요성은 논의가 필요하고, 아래쪽 표에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현황을 참고로 제시하였습니다.

40쪽에 관계부처 의견으로 행안부는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노총에서는 노사가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현재 저희가 별도 위원회 신설보다는 어쨌든 고용정책심의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정책심의회를 활용을 하더라도 전환에 관한 여러 가지에 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노사의 참여를 확대한다든지 별도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려가 없도록 할 생각이구요.

전문위원 지적하신 대로 산업·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정 여부 관계없이 지원사업도 실시 가능하고, 전문위원이 대안으로 제시

하신 대로 ‘지정’ 대신 ‘우선 지원’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에서 전환계획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자고 했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기업에서 특별하게 계획을 받아서 보거나 할 정책적 실익이 꼭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이것은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과도한 침해 우려도 있어서 특별히 실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진(비) 위원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지요, 정확하게?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계획을 다 받아서 이걸 기업별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인사나 전환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규제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계획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실익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이게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심의·의결기구가.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유한 권한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이 전환과 무관하게 고용노동부에 있는 기관이고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새로운 법이, 제정법이 만들어져야 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런 부분들이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원래 기능이 있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아무리 개정을 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보완한다라고 해도 전환과 관련한 것을 포괄하고 심의하고 의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과 관련해서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책임 있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여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 논의가 될 텐데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고,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전환과 관련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게 되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걸이 확실하게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비) 위원 저도 법안을 성안할 때 사실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라든지 따로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탄소중립위원회처럼 그

렇게 격상시켜서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구성이 충분히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당사자들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노동부가 사실은 관련해서 법 개정도……

특히나 결국은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노사의 책임이 굉장히 큼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무리 좋은 전환법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단정지어 버리면 정부의 역할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요. 또 사회적 대화를 끌고 가고 있는 노사 리더들도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위원회 구성과 기능이라든지 위원회의 성원에 대해서 제대로 노사들을 참여시키는 게 맞다, 그 참여가 사실은 책임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바로 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안을 내놓지 못하셨어요, 노동부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지난번에 제가 노동부랑 얘기했던 게 전문위원회에 전문가들을 추천받아서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좀 자문을 받아서 전문위원회가 수립한 계획들이 제대로 실행되게끔 고용정책심의회위원회가 가동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방안으로 마련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은 그런 내용인데 무엇보다도 사회적 대화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 이 부분들을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보장해서 실제로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 주는 게 담겨야지 이 틀거지가 신뢰를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우선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정책의 전반을 다루는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기구이기도 하고 위원회이기도 하고요. 고용정책 전반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여기에 있는 조항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것을 어디에서 심의할 것이냐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정책심의회가 그런 기본계획을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원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별도의 위원회를 둔다 하더라도 고용정책심의회를 대체할 만한 위원 선정을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사의 참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아까 말씀하신 경사노위라는 제도도 있고 또 저희가 정책 수립을 할 때는 당연히 노사 참여자, 이해관계자의 내용을 상당히 의견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치기도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고용정책심의회 하위기구로서 전문위원회를 뒤서 노사가 참여해서 정책 수립, 기본계획 수립서부터 상당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다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 안 관련해서는 고용정책심의회위원회와 그다음에 전환위원회 관련한 임이자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두 안이 거의 비슷하고 강은미 의원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8번부터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모 44쪽입니다.

8번, 9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영향 사전평가입니다.

임이자 의원안은 5년마다 실시하고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영향 사전평가는 노동전환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래 평가사항 표를 보시면 세 번째에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전환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이 표현의 차이가 있고 근로자의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은 이수진 의원안에만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위탁기관 명시 여부 관련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명시하는 것은 향후 위탁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법률 개정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탄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권한 또는 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48쪽입니다.

시책 수립 및 발굴·컨설팅 관련입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11조에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8번 관련해서 지금 내용상 임이자 의원님 안이나 이수진 의원님 안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용어를 어떻게 쓸 거냐, 인력수급 전망으로 쓸 거냐 고용영향평가로 쓸 거냐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인력수급 전망이 잘 아시겠지만 원래 고용정책 기본법에 있는 인력의 수급 전망이라는 부분하고 약간 혼동될 가능성이 있고 또 탄소중립 기본법인가요 거기에서는 고용영향평가라는 용어를 조금 쓰고 있기도 해서 전체적으로는 고용영향 사전평가라든지 고용영향평가 등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일단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어떤 기관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권한과 업무를 누가 할지가 아직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출연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책 수립·발굴 관련해서도 당연히 시책 수립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보다는 ‘실시하거나 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부와 의원님들 발의안 수용과 수정안에 대한 부분들이 대략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의견 받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임이자 위원님과 이수진 위원님 발의안이라서 두 조항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이수진(비) 위원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다음.

○임이자 위원 죄송한데요.

○소위원장 김영진 예, 말씀해 주시지요.

○임이자 위원 제가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제가 좀 일이 있어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 여기 노동전환에 대해서 정의 관련돼 가지고 정의가 좀 정리가 돼야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위원장 김영진 정의?

○임이자 위원 예, 노동전환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넘어갔나요?

○소위원장 김영진 아직 마지막 정리 안 됐어요. 차이를 인정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고용위기를 겪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개념도 있고 노동전환을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이 있어서 그것은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오늘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임이자 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무 것도 정리할 수가 없는 게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이 법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렇지요.

다음 10번부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모 50쪽입니다.

고용안정 등 지원입니다.

임이자 의원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채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안은 이 지원을 정부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것은 표현만 다르지 사실상 동일합니다.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청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지원수준보다 높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다음 52쪽 지자체 등의 지원 관련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지원 유형으로 임이자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원 그리고 세제지원을 제시하고 있고 이수진 의원안은 그 외에 근로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대·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아래 쪽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53쪽의 세제지원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 필요성인데 기재부는 세제지원의 경우 조세 관련 법률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의무규정을 개별법에 두더라도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유사입법례에 보이듯이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이미 유사입법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근로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대·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10번 관련해서 지원주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정부 2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전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정부 전체적으로, 범부처적으로 할 필요성이 좀 있어서 정부로 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 11번의 지자체하고 세제지원 관련해서는 현재 기재부가 세제지원에 대한 내용을 넣는 것에 대해서 일단 반대하고 있기도 하고 사실 여기서 세제지원을 넣는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원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에 개별적인 사항으로 넣어야 되고 또 입법취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세제지원은 들어내고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수진 의원님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단체 등, 대·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을 담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의 간결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아까 고용안정 지원 등 조항에 그냥 근로자단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법을 정리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일단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우리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집행권을 부처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노사 당사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은 예산과 기능을 사용해도 그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불신과 오해가 생긴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 법이 아까 이은주 위원님도 그렇고 사회적 대화 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도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따로 장도 마련하셨던데 사회적 대화라는 게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는 지원하는 단체예요. 결국 그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 주는 건데 그렇다면 그 주체들이 적어도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내고 또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 가지고 본인들의 권리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그들이 내는 세금으로 일정 부분 전환의 시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안에 담기 어려워 하시는 것도 제가 알지요. 기재부가 세제든 예산이든 한푼도 못 준다 이런 취지라든지 입장이라면 실제로 노동부가 법안에 담는 것에 대한 부담은 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전환 지원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기재부랑 논의를 하셔야지요.

제가 작년에 산자부장관, 기재부장관 또 노동부 다 참여하는 회의체에서도 이러저러한들을 얘기들을 들어 봤는데 어렵지요. 어렵지만 기재부 조차도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원하겠다, 예산에 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작년 예산에 고용노동부도 담지 않았습니까,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로?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가 축소되고 역할들이 축소되고 그러는 것들을 봤는데 저는 고용노동부가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기재부와 만나서 세제지원이든 다양한 지원에 대해서 이 법안이라든지 이 취지라든지, 결국은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전환이 벌어질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

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이것은 설득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이 필요한 이유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사실 노동계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노동자들 들러리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그분들한테 설득한 부분도 있었고요. 함께 이 어려운 과고를 해쳐 나가자 그런 의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맞고 그 노력을 다 하셔야 되고 기재부 만나서 논의를 하셔야 되고. 기재부 공무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노동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저희……

○**소위원장 김영진** 추가적으로 의견 듣고 종합해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오늘 이것을 오전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고개를 저음)

○**소위원장 김영진**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세제지원에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세제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 가지고는 말씀드린 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원 근거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실질적으로 규정을 두는 것을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근거 규정보다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실제적으로 산업전환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직접적으로 두는 쪽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노력을 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노사의 어떤 의견을 수용하지 않거나……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지원이나 대책을 수립 하자는 데 대해서는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 지원을 하는 방식이나 지원을 하는 주체에 대해서 대개 법률에 근거를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을 두고 거기 누구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근로자단체나 사업주단체나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크게 많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 근거 법률을 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법률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결

통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들을 통합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지원 세법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전환법에, 모법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탄소중립 기본법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할 수 있다 규정해 놓고……

실제로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환법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조특법상에 별도 조항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충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넣고 정말 구체적으로 전환법을 지원하기 위한 조특법과 지방세특례법을 가지고 추가해서 하는 거라서, 그것은 어차피 기재부와 마지막에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도 충분히 논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모 56쪽입니다.

지원체계 구축 항목이고 다음 항목의 분석센터·지원센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56쪽 지원체계 구축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계속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전환 지원업무로 볼 수 있는데 업무전담기관 규정 방식에 있어서 제정안들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안은 제15조 지원체계 구축에서 업무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수진·강은미 의원안은 별도 조문에서 분석센터 그리고 지원센터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택이 필요합니다.

58쪽 센터 설치·지정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이수진 의원안은 분석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 노동전환분석센터를 두도록 하고 노동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안은 정의로운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이듯이 분석센터가 있고요. 다만 입법형식에 있어서 이수진 의원안으로 갈 경우에 아까 논의했던 고용정보원에 노동전환분석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 기관명을 두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59쪽의 노동전환지원센터 또는 정의로운일자리

전환지원센터는 노동전환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두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일치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법체계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저희가 이것을 특정한 기관에 특정한 센터를 규율하는 것보다는 ‘업무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 관련해서 업무전담기관보다는 업무수행기관으로 명칭을 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여러 기관들이 업무를 같이 수행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한 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업무수행기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이수진 의원님 안처럼 이 수행기관이 지정이 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 같이 들어가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서 전체적인 업무 수행에 훨씬 더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비) 위원 사실 탄소중립 기본법이 만들어진 지 정의로운노동전환지원센터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노동전환에 대한 세부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은 다들 공히 인정을 하시고 또 노동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선제적으로 하시고 또 사후적으로는 직무전환 등과 관련된 역할들도 성공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노동전환분석센터·지원센터 필요하다, 저는 이걸 고용노동부도 공히 인정하시는 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딱 둔다, 기관을 명시할 필요는 없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결국은 지역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게 시스템이 빨리 구축이 돼야 되잖아요, 거버넌스 구축되고 거버넌스에 노사 공히 참석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끔찍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 지역이라는 것은 정부나 아니면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바로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또 분석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체계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과거에 제가 처음 국회에 들어와서, 고용정보원에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노동전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특히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50대 이상의 남성노동자들이—주로 조선업이라든지 그런 쪽이겠지요, 제철 관련해서—일자리가 없어지거나 문제가 됐을 때 역할에 대한 전환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이분들을 충분히 훈련을 시켜서 직업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불가능하다.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유가.

사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돌봄노동이라든지 굉장히 질은 낮지만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많이 이동이 되고 있어요. 안타깝기는 하지요, 경력단절 이후에 너무나 안 좋은 일자리로 이전을 하니깐. 그런데 남성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50대 이상의 남성노동자들이 어떤 교육으로 인한 직업전환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다 조사를 해 봤기 때문이거든요, 고용정보원에서.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산업전환과 관련해서 주로 사오십 대 이상의 남성들의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와 대책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센터를 지역까지 포함해서 만드는 것 정말…… 그런데 중앙에서 제대로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않으면 지역에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되거든요. 이게 또 급하기도 하고요. 중앙에서 한 다음에 지역까지 가는 데는 또 수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금방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은 이유는 어차피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신뢰가 필요한 일이고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아 놓고 진행을 해야 고용노동

부도 일하시기 훨씬 수월할 거다, 그런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법에도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가 포함돼 있지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결국은 이 전환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결국 그렇게 돼야 고용노동부도 도움을 받게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인력 수요 변화랑 전망을 분석하고 그리고 통계를 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 일자리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고용노동부, 제가 상임위 때 매번 현장 근로감독에 대한 것 꼼꼼하게 해야 된다 얘기하면 늘 얘기하시잖아요. 인원이 없고 이런 부분들 얘기하시는데 이런 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한 법이 제정되는 것은 고용노동부를 도와주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강조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업무수행기관을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하거나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업무 수행을 하는 기관을 둘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드리고.

사실 여러 가지 산업전환에 대한 고용지원 문제를 정부 내에서 부처 내에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한 부처도 저희고요. 2020년도에 가장 먼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 정부 차원에서 보면 집행을 원활하게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이 구성이 되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12항에 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그다음에 13항 관련해서 그것이 노동전환분석센터든 아니면 여타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해 주시지요, 마지막까지.

○전문위원 김원모 62쪽입니다.

14번 관계기관 간의 협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보를 파악하여야 정확한 컨설팅이 가능하고 지원사업 간 중복 방지 및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서 관련 절차를 규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위임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하단에 안 제11조 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64쪽 보고·검사 관련입니다.

제정안은 장관이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고·검사의 객체는, 즉 대상기관은 임이자 의원안은 15조 지원업무 전담기관이고 이수진 의원안은 노동지원센터입니다. 앞에서 정리되는 데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66쪽 자료제공의무는 조항이 없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추가 요청하는 부분인데 관계기관 보유정보 수집을 위한 조문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왼쪽에 있는 고용안정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간 자료제출 의무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쪽의 1안과 그 다음 페이지의 2안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로 다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기섭 관계기관 협조 관련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수진 의원님 안에 있는 것처럼 알리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약간, 그간에 입법례가 드문 부분이 있어서 신설하거나 변경하거나 여러 가지 할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드리면 그걸로 정리가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고·검사 관련해서는 임이자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안에 다 들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16번 자료제공의무 관련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게 1안과 2안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업무전담기관에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 2안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으로 제정안에 넣어 주셨으면 하고 17번 부칙에 관해서는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16, 17 관련해서는 정부 측에서 수정안 수용 그리고 정부 측의 추가 조문 요청 중에 2안에 대한 제안 사안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고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14, 15, 16, 17 전체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5항·6항·7항 산업구조 전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이수진·강은미·임이자 의원 3건의 법률안에 관해서 검토했구요. 22일 날 진술인 의견을 듣고 2차 논의를 통해서 각 조항별로 합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예결위 전체회의 질의가 있어서 해당 소속 위원들이 계속 두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상황을 보고 실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논의의 여러 가지 질적 수준이나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윤건영 소위 위원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오늘 오전에 병원에서 확진을 받아서 못 나오시는 경우가 생겨서 전체 성원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임이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말씀해 주시지요.

○임이자 위원 그러시면, 오늘 저도 오전부터 죽 봤지만 소위를 통해서 여야 간에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조율하고 거기서 서로 타진해서 타협을 이뤄 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따로 하루 날을 잡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시든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박대수 위원 동의합니다, 임 위원 말씀에.

○소위원장 김영진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빠지고 왔다 갔다 해서 이후에 의결을 하더라도 문제 제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당 환노위 의원님들 발의가 많은데, 오늘 또 이주환 의원님 발의안이나 박대수 의원님 발의안 다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의견 한번 주시지요, 이은주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이은주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운영위 위원으로 저도 양쪽 상임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박대수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 저도 그렇고 이수진 위원도 그렇고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중이라서 추후에 잡는 것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차관님,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 사실은 이태원 참사 관련 여러 가지 것들에 운영위 일정이 연계되어 있고 하면서 이런 사정변경이 생겨서 이 안에 관해서는 별도로 고용노동소위 한 번 더 잡아서 남겨진 것을 진행하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임이자 위원 예,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고용노동소위가 논의를 좀 더 진중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논의는 여

기까지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일자를 하루 잡아서 다시, 위원님들 될 수 있는 일자로 잡아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위원장님, 다음 날짜 잡을 때 꼭……

○소위원장 김영진 예, 이은주 위원님께도……

○임이자 위원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그것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은주 위원 아니요, 그건 22일로 확정이 된 거고.

○소위원장 김영진 22일은 결정됐고요.

○임이자 위원 아니, 스톱킹 관련돼 가지고 그것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은주 위원 아니요.

○임이자 위원 그러면?

○이은주 위원 다음 소위 일정 잡을 때 사전에 일정과 관련해서……

○소위원장 김영진 예, 제가 이은주 위원님께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이자 위원 이은주 위원은 야당이니까 야당에서 통보……

○소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원래는 그건 여당이 하는 게 맞습니다. 저기도 야당이고 저도 야당입니다.

○임이자 위원 야당에서 하시라고요.

○이은주 위원 어쨌든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오늘 오셨는데 고용노동부 차관님과 실·국장님께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영진 박대수 이수진(비) 이은주
이주환 임이자 전용기

○청가 위원(1인)

윤건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모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차	관	권	기	섭
직업능력정책국장		권	태	성
통합고용정책국장		하	형	소